

[별표 4]

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·위탁수수료 요율(제90조제2항 관련)

손 실 보 상 금 액	수수료 요율기준 (손실보상금액에 관한 비율)
10억원 이하	20/1000 이내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17/1000 이내
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15/1000 이내
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	13/1000 이내
100억원 초과	10/1000 이내

※ 비고

1. “손실보상금액”이란 토지매입비,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, 권리 또는 지상물의 보상비 및 이주대책사업비(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.
2.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위임·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에 가산한다.
3. 손실보상업무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, 지목변경 및 관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에 드는 비용은 위임·위탁수수료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.
4. 위임(위탁)자와 수임(수탁)자는 매수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업무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한다.